

학교법인 호서학원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호서학원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과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 등) ①교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 및 법인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②“교직원”이라 함은 법인과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과 사무직원 및 이들에 준하여 인사관련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징계의 구분) ①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중징계 : 파면·해임·정직·강등

2. 경징계 : 감봉·견책

②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.

1. 강등 : 1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. 단,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2. 정직 :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,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.

3. 감봉 :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,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. 단, 직원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감한다.

4. 견책 :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.

5. 경고 :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하여 공적 및 정상 등을 참작하여 불문으로 의결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“불문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경고한다”로 한다.

제4조(징계의 절차)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하고,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학교소속 교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징계

의결 요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.

1. 사립학교법과 교육관련 법령 및 정관(정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)에 위반하여 교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.
2.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.
3.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.
4.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교사(敎唆)·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
5. 학사일정을 방해 또는 학교를 비방 모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학생을 교사(敎唆)·선동하는 등 해교행위를 한 때
6. 기타 인사규정 또는 복무규정 등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

제5조(징계의결요구의 제청 등) ①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이사장에게 제청하는 때에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자료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하고,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제청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하여 제청을 받은 이사장은 징계사건에 대한 재조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와 징계요구의견에 따라 해당 징계위원회에 지체없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.

제6조(징계의 양정) ①징계는 징계양정기준·징계양정감경기준·징계책임기준 및 징계가중처벌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요구의 제청·징계의결의 요구·징계의결 및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

②징계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유형·비위정도·과실의 경중·평소소행·근무성적·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‘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’ 제2조 제1항에 관련된 [별표]의 징계기준에 따라야 한다.

③징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2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당해 교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된다.

1.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훈장·포장 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

받은 공적

2. 이사장 및 이 법인소속 학교의 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(근속표창은 제외한다)

④징계사유가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로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,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비위의 내용 및 관련정도를 참작하여 ‘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’ 별표2의 징계책임기준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.

⑤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승진제한 임용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의결하고,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하여야 한다.

제7조(징계의결의 재심사청구) ①이사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는 그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.

제8조(비밀누설금지) 징계사건에 관여한 자는 누구든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,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9조(위임사항)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부 칙(2008. 2. 21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삭제(2017.08.10.)

[별표 2] (2014.8.20. 개정)

징계의 감경기준

별표1에 의한 징계양정	제6조 제3에 의한 감경기준
파면	해임
해임	강등
강등	정직
정직	감봉
감봉	견책
견책	불문(경고)

[별표 3] 삭제(2019.11.28.)

[별표 4] 삭제(2014.8.20.)

[별표 5] 삭제(2014.8.20.)